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년 2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가.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 내용 없이 조례안에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벗어난 조항으로 삭제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 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전문교육 및 방재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정비 하였으며
 - 기타 제명 및 일부 조문은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로서 개정을 우리구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즉 지역자율방재단원에 교육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 정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42 호
----------	---------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전문교육 및 방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여 자율적인 방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삭제(안 제15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대표”를 “동 대표”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음해”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청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단장 이”를 “단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u> <u>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방재단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p> <p>제3조(명칭) 명칭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u>(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u>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u>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② ~ ⑦ (생략)</p> <p>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u>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u> <u>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u>----- ----- -----.</p> <p>제2조(설치)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p> <p>제3조(명칭)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u>----- -----.</p> <p>제4조(조직) ① ----- <u>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u>-----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u>----- -----.</p>

② ~ ④ (생략)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 ④ (생략)

⑤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략)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0조(운영) ① ~ ③ (생략)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 대표-----
-----.

제6조(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자율방재협의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⑤ -----
1명-----
-----.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방재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① ----- 다음 연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④ -----

----- 범위-----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 ① -----
-----구청장

-----.

<삭제>

<삭제>

④ (생략)

제16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 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훈련) ① -----
----- . -----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